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하천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완섭 (환경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도 하천 공사시행계획 수립 등에 장기간 소요되어 홍수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

소하천 정비의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안전조치 또는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로 정해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이에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경우에도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실시하는 안전·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시급한 공사는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하천공사에 포함시키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. . ~ 2025. 2. 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(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로 한정한다)에 해당하는 공사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6조(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공사 를 말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6조(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」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 급조치(미리 하천관리청과 협 의한 경우로 한정한다)에 해 당하는 공사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환경부 하천계획과	
연 락 처	(044) 201 - 7713